

의안번호	2208703
의 퇴 인	용혜인 의원
회 답 일	2025. 5. 7.
추계번호	25A1412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제4호의3 신설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교역상대국의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권침해 행위와 우리나라의 무역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5조제4호의3 신설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제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제5조에 따라 물품등¹⁾의 수출입을 제한·금지할 수 있는 특별조치(이하 “특별조치”)의 요건으로 “교역상대국의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권침해 행위와 우리나라의 무역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를 추가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부가 국제법규나 규범, 국제공조 등과 독립적으로 특별조치를 할 수 있게 되며, 특별조치를 실시하기 전 해당 사실에 대한

1) 현행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물품, 용역 및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말함

조사(이하 “사전조사”)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재정지출이 발생할 가능성

- 개정안의 내용은 기존 요건으로 완전히 포괄되지 않는 교역상대국의 인권침해 행위를 규율하려는 것으로, 시행될 경우 특별조치 대상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따른 “교역상대국의 인권침해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기존 요건으로 현행법 제5조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²⁾를 고려할 수 있으나, 제4호 및 제4호의2는 국제법규 및 국제공조 등을 요건에 포함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 규정을 근거로 수출입을 제한하기 어려우며, 제5호의 경우 포괄적인 내용으로 교역상대국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직접 적용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제법규 등으로 제재가 결의되지 않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독립적으로 수출입 제한을 결정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³⁾, 이 경우 특별조치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
- 특별조치에 따른 통제품목이 추가될 경우 전략물자 판정업무⁴⁾가 증가하여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개정안은 이러한 특별조치 대상에 대한 사전조사 절차를 별도로 두고

2) 「대외무역법」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 수입, 경유, 환적(換積) 또는 중개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의 무역 상대국(이하 “교역상대국”이라 한다)에 전쟁·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2. 교역상대국이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3.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할 경우

4.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4의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에 따른 교역여건의 급변으로 교역상대국과의 무역에 관한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5. 인간의 생명·건강 및 안전, 동물과 식물의 생명 및 건강, 환경보전 또는 국내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 3) 제21대국회 당시 발의된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검토보고에서도 “현행법 상 UN안보리 결의안 등 국제법규에 따른 무역제한조치는 법 제5조제4호, 금융제재 등 국제협력에 따른 무역제한조치는 같은 조 제4호의2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개정안의 경우 국제공조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무역제한조치를 신설(…)”하였다고 검토하여 해당 규정을 근거로 독립적인 무역제한조치 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음

* 의안번호 제2116395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7.11. 용혜인의원 대표발의

- 4) 현행법 제20조에 따라 수출 등을 하려는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판정하는 것을 말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등에 따라 무역안보관리원 등이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 전략물자(법 제19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 지정·고시한 물품등

있지는 않으나, 현행법 시행령 제6조⁵⁾의 내용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특별조치 대상 또한 사전조사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시행될 경우 조사 비용 발생 등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계 대상 비용으로는 무역안보관리원에 대한 위탁사업비나 사전조사에 소요되는 연구용역비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조사 대상이 될 교역상대국의 수와 수출 통제품목, 사전조사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할 수 없음

- 물품등을 수출하려는 자가 해당 물품등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무역안보관리원 등 전문기관이 소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 받아 이를 판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품목이 증가할 경우 판정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경비 등이 증가하여 정부의 위탁사업비가 증가할 수 있음
- 또한, 현행법 시행령 제6조제5항⁶⁾은 특별조치를 위한 사전 조사 기간을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간 동안 연구용역 등의 방법을 통해 교역상대국에 대한 조사가 실시될 수 있으며, 현행법 제25조⁷⁾ 및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7조(판정기관) ① 허가기관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판정을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장은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무역안보관리원(이하 ‘무역안보관리원’이라 한다),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라 한다),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에 전략물자등에 대한 판정업무를 위탁한다. 1. 무역안보관리원 : 별표2의 제1부부터 제9부까지에 해당되는 물품등과 별표2의2에 해당되는 물품등 2.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별표 2의 제10부에 해당되는 물품등 3. 국방기술품질원 : 별표3에 해당되는 물품등
--

5)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조(특별조치를 위한 조사 및 협의 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2호·제3호·제4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역상대국에 대하여 물품등의 수출·수입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특별조치”라 한다)를 하려면 미리 그 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6)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조(특별조치를 위한 조사 및 협의 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2호·제3호·제4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역상대국에 대하여 물품등의 수출·수입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특별조치”라 한다)를 하려면 미리 그 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끝내야 한다.

7) 「대외무역법」

제25조(무역안보관리원의 설립 등) ①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안보관리원을 설립한다.

제46조제2호⁸⁾의 규정을 고려할 때 무역안보관리원이 해당 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될 수도 있음

- 이 경우 업무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액, 사전조사 실시에 따른 신규 연구 용역비나 위탁사업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개정규정으로 인해 조사 대상이 될 교역상대국의 수나 수출 통제품목을 예측할 수 없고 사전 조사의 경우 사안별로 조사 범위나 규모 등도 달라질 수 있어 합리적인 가정을 통해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교역상대국의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등 인권침해 행위와 우리나라의 무역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 해당 교역상대국에 대하여 물품등의 수출입을 제한·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

* [참고자료] 특별조치(무역 제재) 도입 현황

Ⅲ. 부대의견

- 없음

⑤무역안보관리원은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무역안보 정책수립 지원

2. ~ 8. (생략)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⑧정부는 무역안보관리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8)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6조(무역안보관리원의 업무) 법 제25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2. 법 제5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무역제한 특별조치 이행을 위한 정보 제공 등 지원 업무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na.go.kr

[참고자료] 특별조치(무역 제재) 도입 현황

국가	금지 내용('23.10월 기준)	시행
이라크	1. (수출 금지)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 군용장비 및 군용관련 부품 2. (수입 금지)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98.1월
소말리아	1. (수출 금지) 무기 및 군용장비 2. (수출 금지) 군사활동 관련 기술자문 및 기타 지원, 훈련 3. (수출 금지) 별표 9에 따라 지정된 품목	02.7월
콩고민주 공화국	1. (수출 금지) 무기 및 관련 물품 2. (수출 금지) 군사활동 관련 지원, 자문, 훈련의 제공	05.1월
수단 공화국	1. (다르푸르 수출 금지)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 군용장비 및 군용관련 부품 2. (다르푸르 수출 금지) 제1호와 관련된 군용품의 설비, 생산, 유지, 사용과 관련된 기술 지원, 훈련제공	06.1월
레바논	1. (수출 금지)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 군용장비 및 군용관련 부품 2. (수출 금지) 제1호와 관련된 군용품의 설비, 생산, 유지, 사용과 관련된 기술적 자문, 훈련제공	11.5월
리비아	1. (수출입 금지)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 군용장비 및 군용관련 부품 2. (수출입 금지) 제1호와 관련된 군용품의 설비, 생산, 유지, 사용과 관련된 기술적 자문, 훈련제공, 무장용병 등	11.5월
시리아	1. (수입 금지) 화학무기 2. (수입 금지) 화학무기 관련 장비, 제품, 기술지원	13.12월
북한	(이하 제3국을 통한 수출입 금지) 1. 모든 무기 및 관련 물품 2. 핵공급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오스트레일리아 그룹(AG)에서 지정한 전략물자 3. 별표 5에 따라 지정된 물품등 4. 별표 6에 따라 지정된 물품등 5. 제1호 내지 제4호에 명시된 물품등의 비축, 제조, 유지, 사용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기술훈련, 자문, 서비스, 지원 등(고등 물리학, 고등 컴퓨터 시뮬레이션 및 관련 컴퓨터 과학, 지리공간 항법, 핵공학, 항공우주 공학, 비행 공학, 고등 재료과학, 고등 화학공학, 고등 기계공학, 고등 전기공학, 고등 산업공학을 포함) (이하 제3국을 통한 수출 금지) 1. 진주, 보석, 보석용 원석, 귀금속(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 등 포함) 등의 보석제품 2. 요트, 고급 자동차, 경주용 차, 수상 레크레이션 장비(개인선박 등),	18.8월

국가	금지 내용('23.10월 기준)	시행
	스노모빌(미화 2천 달러 이상 가치) 등의 이동수단 3. 손목시계, 회중시계 및 케이스가 여타 귀금속 또는 귀금속 도금으로 제작된 고급시계 4. 납 크리스탈 제품 5. 레크레이션 스포츠 장비 6. 가액이 미화 5백 달러 이상인 양탄자 및 태피스트리(tapestries) 7. 가액이 미화 1백 달러 이상인 자기 또는 본차이나로 된 식기류 8. 산업용 기계(HS 84류~85류), 운송수단(HS 86류~89류), 철강 및 기타 금속(HS 72류~83류) 단, 민항기 유지보수용 예비부품은 제외 9. 항공기용 가솔린, 나프타식 제트연료, 케로신식 제트연료, 케로신식 로켓연료를 포함한 항공유 10. 콘덴세이트, 액화천연가스 11. 정유제품 및 원유 (이하 제3국을 통한 수입 금지) 1. 석탄, 철, 철광석 2. 금, 티타늄광, 마나듐광 및 희토류 3. 동, 니켈, 은, 아연, 납, 납광석 4. 조형물(statue) 5. 해산물(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수생 무척추동물 포함) 6. 섬유(직물, 의류 등 포함) 7. 식료품·농산품(HS 07류~08류, HS 12류), 마그네사이트·마그네시아를 포함 토석(HS 25류), 목재(HS 44류), 기계(HS 84류), 전기기기(HS 85류), 선박(HS 89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1. (수출 금지)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 군용장비 및 이와 관련된 부품 2. (수출 금지) 무장용병 제공 포함, 군사활동 또는 모든 무기 및 관련 물품의 제공·유지보수·사용과 관련된 기술지원, 훈련 및 여타지원	15.10월
예멘	1. (제재대상자 수출 금지)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군용장비 및 이와 관련된 부품 등 모든 무기 및 관련 군수품 2. (제재대상자 수출 금지) 무장용병 제공 포함, 군사활동 또는 모든 무기 및 관련 물품의 제공·유지보수·사용과 관련된 기술지원, 훈련 및 여타지원	21.11월
남수단 공화국	1. (수출 금지)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 군용장비 및 군용관련 구성품 2. (수출 금지) 기술지원, 훈련 또는 여타 지원(무장용병 제공 포함)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군사활동 나. 모든 무기 및 관련 물품의 제공·유지보수·사용	21.11월

자료: 산업통상자원부